

대한건축사협회 정관개정

재정	1965.	12.	3
개정	1966.	11.	8
	1968.	7.	15
	1971.	11.	26
	1974.	7.	9
	1976.	4.	14
	1977.	10.	29
			1967. 3. 24
			1970. 3. 6
			1973. 10. 27
			1974. 12. 30
			1977. 3. 9

제 1장 총 칙

제 1조 본 회는 건축사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한 건축사 협회 (이하 본협회라 한다)라 부른다.

제 2조 본 협회는 사무소 개설 등록을 마친 자로서 조직 한다.

제 3조 본협회는 건축사의 품위 보존, 상호 친목등 권익 옹호와 건축사 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통하여 건축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아울러 국가의 건축 시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본협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지부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 도에 둔다.

제 5조 본협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항에 관한 사업을 한다.

- 1) 건축 및 건축사 업무에 관한 연구 조사 통계, 감정, 증명 및 선전
- 2) 건축사 업무, 보수 기준에 대한 책정
- 3) 회원의 업무에 관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조정
- 4) 건축에 관한 교양, 작품 발표 및 자재 전시
- 5) 건축에 관한 국제 기구에의 참여와 국제 교류
- 6) 회원의 후생을 위한 공제회의 설립
- 7) 본협회의 기관지 간행 및 출판
- 8) 지방적으로 필요 불가결한 지부 사업에 대한 보조
- 9) 기타 제 3조의 목적 달성을 필요한 사업

제 6조 본 협회는 이 정관으로 정하는 외에 조직과 업무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다.

제 2장 회 원

제 7조 본 협회는 다음의 회원을 둔다.

1. 정회원
2. 추대회원
3. 명예회원
4. 찬조회원

제 8조 1) 정회원은 건축사법에 의거 건축 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자로 한다.

2) 추대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회원으로서 총회에서 추대받은 사람으로 한다.

1. 본 협회의 공로가 많은 정회원
2. 만 65세 이상의 정회원

3) 명예회원은 저명한 외국 건축사로서 이사회에서 추대받은 사람으로 한다.

4) 찬조회원은 본 협회의 사업 목적을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 9조 1) 본 협회의 정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발의 및 의결권
2. 선거 및 피선거권
3. 회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1) 본 협회의 정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2. 윤리 규약의 준수
3. 입회비 및 각종 회비의 납부
2) 추대 회원의 된 정 회원에게는 정회원 회비 중 월정회비를 면제한다.

제11조 1) 정회원이 본 협회의 정관 및 윤리 규약을 위반하였을 때는 본회의 윤리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견을 얻어 그 정상에 따라 다음의 징계를 한다.

1. 견 책
 2. 업무 정지
 3. 제명
- 2) 윤리 규약 및 윤리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 3) 정회원의 납부하는 정회원의 회비를 미납하였을 때에는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부장의 의견을 들어 이사회의 의결로서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견책
 2. 6개월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회원 업무 정지
 3. 1년 이상 미납하였을 때에는 제명

제12조 1) 정회원이 건축사 법령 본 협회의 정관 및 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입두 정치의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정지 기간중 본 협회의 회원으로서의 권리가 정지된다.

2) 전항에 해당하는 회원이 본 협회의 임원 또는 대의원일때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그 직책이 해임된다.

제13조 정회원이 건축사 면허 취소 처분을 받거나 또는 면허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본 협회에서 제명된다.

제 3 장 임 원

제14조 본 협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총무이사 1명 (이사중에서 호선한다)
3. 이사 4명
4. 감사 2명

제15조 1)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하고 종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총무이사는 회장을 보좌하여 회장 유고시는 직무를 대행한다.

3) 이사는 이사회를 조직하며, 본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본 협회의 업무 및 회계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종회에 보고한다.

제16조 회장, 이사 및 감사는 정회원중 종회에서 선출한다.

제17조 1) 임원중 회장 및 이사회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중임할 수 있다.
2) 임원중 이사 3명, 감사 1명의 임기는 초회에 한하여 1년으로 한다.
3) 임원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보선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 90일 이내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임원중 회장 및 이사의 취임은 주무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1) 본 협회에 고문 약간명을 두되, 국내의 저명한 인사중에서 이사회가 이를 추대한다.

2)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 4 장 회 의

제20조 본 협회에 다음의 회의를 둈다.

- 1) 총 회
- 2) 이 사 회
- 3) 위 원 회

제21조 1) 총회를 구분하여 정기 및 임시의 2종으로 한다.

2) 총회는 대의원으로서 이를 구성한다.
3. 대의원은 각 시도 지부 단위로 정회원수를 기준하여 30인에 대하여 1인의 비율로 선출하되 그 단수가 15인 이상일 때에도 이를 30인으로 하여 각 시도 지부장은 선출 인원에 관계없이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단, 정회원수가 30인이 미달되는 지부는 1인의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

- 4) 정기 총회는 매년 10월중에 소집한다.
- 5) 임시 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대의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의 요구가 있을 때
 3.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4.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22조 1) 총회는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총회의 소집은 최소한 10일전에 총회의 목적 사항, 일시, 장소 등을 표시한 문서로서 회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내에서 발간하는 일간 신문에 공고한다.

제23조 총회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 개정
2. 임원 개선
3. 사업 보고서, 재산 목록, 수지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의 승인
4. 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의 승인
5. 기본 재산의 설치 및 처분
6. 재규정의 제정 및 개폐
7.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24조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찬반 동수인 경우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3) 정관 개정은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총회의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1)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서 조직하고 필요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2) 이사회는 총회의 위임 사항 및 회무 집행에 관한 제반 사항을 의결한다.
3)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찬반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4) 감사 및 지부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6조 본 협회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1. 기획 위원회
2. 윤리 위원회
3. 편찬 위원회
4. 지도 위원회
5. 연구 위원회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위원회

제27조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 위원 약간명을 두되 이사회가 이를 선임한다.
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성원 및 의결 방법은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사회에 관한 절차에 따른다.
4) 각종 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 5 장 사 무 기 구

제28조 1) 본 협회에 사무처를 두고 처장 1명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둈다.

2) 처장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회장이 이를 임명한다.

3) 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9조 1) 사무처에는 다음의 부서를 둔다.

1. 총무부
2. 기술부
3. 기획부
4. 사업부
5. 출판부

2) 부에는 담당 직원을 두되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회장의 이를 임명한다.

제30조 1) 회장, 이사, 감사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처장 및 각과 직원은 유급으로 하되 보수액은 보수 규정에 의한다.

2) 임원 및 위원이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비용이 소요될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하고 환공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6 장 재 산 및 회 비

제31조 본 협회의 제정은 입회비, 정회원비, 찬조회비 및 사업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1. 입회비…정회원이 되었을 때 납부하는 입회금
 2. 정회원의 회비…정회원이 납부하는 월정회비 및 사업 실적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하는 회비
 3. 찬조회비…찬조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
 4. 사업수비…회지 간행에 따르는 광고료 사업계획에 따르는 간행물 배부 대금
 5. 수수료…재증명 수수료
 6. 기타수입…기타 잡수입
- 2) 입회비 및 정회원회비의 징수율 또는 징수금액은 매년 총회에서 정하되 예산 승인시 병행하여 정하며 찬조회비, 사업 수입, 수수료의 징수율 또는 징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2조 1) 본 협회 회계 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해당 년도중에 확정된 수익금과 지출금의 수납 및 지출은 다음 년도 1월 31일 까지로 한다.

2) 본 협회에는 특별회계를 둘 수 있다.

제33조 회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재산 목록, 손익 계산서 수지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의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지부

- 제34조 지부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업을 한다.
- 건축 및 건축사 업무에 관한 연구, 조사, 통계, 감정 증명 및 선전
 - 건축에 관한 회원의 교양 및 각종 발표
 - 협회 본부에서 위임 받은 사항
 - 회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공제회 설립
 -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된 사업
- 제35조 지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지부장 1명
 - 간사(간사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 회원이 50명 이내인 지부는 3명
 - 회원이 51명 내지 200명인 지부는 5명
 - 회원이 201명 내지 400명인 지부는 7명
 - 회원이 401명 이상인 지부는 9명
 - 감사 2명
 - 대의원 수는 제21조 3)항에 규정한 바에 따른다.
 - 분소장 분소당 1명
- 제36조 1) 지부장은 지부를 대표하며 지부 회무를 통리하고 지부총회 및 간사회의 의장이 된다.
2) 지부장 유고시에는 지부장이 지명한 간사가 이를 대행한다.
3) 간사회는 간사로서 조직하며 지부의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한다.
4) 감사는 지부의 회계 사무를 감사하며 이를 지부 총회에 보고 한다.
5. 감사 및 분소장은 간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수 있다.
- 제37조 지부장, 간사, 감사, 대의원 및 분소장은 정회원 중 지부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38조 1) 지부장, 간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중임 할수 있다.
2) 분소장 및 대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 할 수 있다.
3) 임원의 보선과 그 임기는 제17조 제3항에 규정함에 따른다.
- 제39조 지부가 분소를 설치 할때는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 제40조 지부에는 다음의 회의를 둔다.
- 총회
 - 간사회
 - 위원회
- 제41조 1) 총회는 정기 및 임시의 2종으로 한다.
2) 총회는 지부 소속 정회원으로 이를 구성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중에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 간사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 지부 소속 정회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제42조 총회의 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임원 개선
- 사업 보고서, 재산목록, 수지 결산서 및 대차 대조표의 승인
- 사업 계획의 승인
- 기타 간사회에서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부의 하는 사항

제43조 총회의 소집자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등은 협회 총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정회원이 300명을 초과하는 지부의 총회는 소속된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 출석으로 성립할 수 있다.

제44조 간사회는 지부장 및 간사로 조직하며 소집 성원 및 의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45조 지부는 다음의 위원회를 둔다.

- 윤리 위원회
 - 도서 심의 위원회
 - 지도 위원회
 - 회관 건립 위원회
-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분소에도 도서 심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6조 위원회의 규정은 협회의 위원회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 제47조 1) 지부에 사무국을 두고 사무국장 1명과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2) 사무국장은 간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3. 사무국장은 지부장의 명을 받아 지부의 회무를 처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8조 1) 사무국에는 다음의 부서를 둘 수 있다.

- 총무
 - 기술
 - 사업
- 2) 각 부서의 직원은 간사회의 의결을 받아 지부장이 이를 임명한다. 다만 각 지부의 직원 정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 제49조 1) 지부장, 간사, 감사, 대의원, 분소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사무국장 및 직원은 유급으로 하되 보수액은 보수 규정에 의한다.
2) 임원 및 위원이 회무를 집행 하기 위하여 비용이 들 때에는 그 실비를 지급한다.

제50조 지부가 총회를 가졌을 때는 1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창립 총회의 경우

- 가. 회원 명단(성명, 주소, 급별, 사무소 소재지 등 포함)

- 나. 임원의 명단 및 이력서

- 다. 사업 계획서

- 라. 총회 회의록

2. 정기 총회의 경우

- 가. 회원 명단

- 나. 개선된 임원 명단 및 이력서

- 다. 사업 계획서

- 라. 총회 회의록

3. 임시 총회의 경우

- 가. 의결된 사항

- 나. 총회 회의록

- 다. 사업 보고서 및 수지 결산서

다만 회장은 지부 임원이 (감사 및 대의원은 제외) 업무 수행에 있어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임원의 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51조 지부가 총회에서 승인된 사업 계획서 이외에 사업을 수행코자 할 때는 그 사업의 실시 10일전에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의 승인을 받는다.

1. 추가 사업 계획서 및 소요 예산 내역서

제52조 1) 지부는 매월 10일 까지 회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회에 보고한다.

- 1. 전월의 일반 회무 보고서

- 2. 전월의 사업 보고서 및 회계 보고서

- 3. 그달의 사업 계획 및 수입 지출 계획서

2) 월예 보고외에 특수 사항 또는 돌발 사항이 있을 때는 즉시 협회에 보고한다.

제53조 지부는 일반 및 회계에 관하여 협회의 감사를 년 1회 이상 받는다.

제54조 1) 지부의 재정은 협회에서 배정하는 예산으로 충당한다.

2) 지부에 배정하는 예산은 협회 정기 총회에서 정한다.

제55조 지부의 회계 년도는 1년으로 하고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마감한다.

다만 당해년도 중에 확정된 수입금과 지출금의 수납 및 지출은 다음 년도 1월 20일 까지로 한다.

제57조 지부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 재산목록, 수지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8 장 부 칙

창립 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은 제2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선출된 것으로 본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5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6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7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68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0년 3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1년 11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3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4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서기 1974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2) (지부 간사의 임기의 대한 경과 조치)

제38조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975년도 정기 총회에서 선출되는 간사에 한하여 간사 정원의 과반수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타 간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서기 1976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1977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 조치

이 규칙중 제38조 제 2항의 대의원의 임기를 적용함에 있어 각 지부에서는 이 규정 시행 이후 첫년도에 한하여 대의원의 정원의 2분의 1 (소수점 이하는 절상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기타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부 칙

1) 본 정관은 1977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2) 본 정관중 제17조 제 1항 및 제38조 제 1항의 3년으로 개정된 임원의 임기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정 시행 이후에 새로 선출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